#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14 발의연월일: 2021. 6. 2.

발 의 자:송기헌·김승원·김영호

박성준 · 백혜련 · 소병철

안규백 • 윤건영 • 이상헌

이성만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·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,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.

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8조제1항 등).

#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신설한다.

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- 1.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2. 징계 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년

3.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3년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7조의2(징계부가금) ① (생 략) 제7조의2(징계부가금) ①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바. (생 략)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 <신 설> 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8조(징계등 사유의 시효) ① 징 제8조(징계등 사유의 시효) ① 징 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 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 (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) 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 하지 못한다. 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. 1.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 상 성범죄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. 징계 등 사유가 제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: 5년 3.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

②·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<u>하는 경우: 3년</u>